

토/론/자/료/집

cpb.d.3

12 16

## 5, 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6월 항쟁 정신에 비추워 본 과거 청산

- 일시 : 1996. 1. 12(금) 오후 3시
-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민주열사박증철기념사업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15번지 4층 (☎766-8459, FAX 747-8897)

## 식순

개회사

민중의례

인사말

토론

-사회 : 김장권 (숭실대 교수)

기본발제 :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 박계동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박래군 (인권운동 사랑방)

이한구 (성균관대 교수)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추모사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 기념사업회는 오는 1월 14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 묘지에서 “박종철 9주기 추모식”을 가지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당일 오전 9시 동대문운동장 시계탑앞에 집결해 출발.

## 차례

### ● 인사말

2

### ● 기본발제

4

과거청산, 이대로 좋은가

### ● 토론발제

28

부정부패의 원천을 민주대연합의 관점에서 청산하자

청산되어야 할 5, 6공 하의 주요 인권문제

5, 6공 청산의 역사적 의의와 극복해야 할 과제

### ● 추모사

40

## 박종철 9주기를 맞으며

세월은 어느덧 흘러 오늘 박종철 군의 9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9주기에는 그의 넋을 위로하고 그 죽음을 되새기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합니다.

군사독재의 암울하고 참담했던 시절을 되풀이 하기만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심판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박종철군을 끝내 죽음으로 몰고간 독재정권의 상징적 인물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어 그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불어 87년 6월항쟁이 승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설 수 있게 되기 까지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의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씨가 구속되고 처벌되는 것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이제 막 푸는 정도일 뿐입니다. 5,6공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뿌리내리는 먼 길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철군의 9주기를 맞아 앞서간 의인들 앞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뜻을 확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해보니, 현재의 5,6공 청산은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죽어간 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5,6공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전원 처벌은 물론이고, 5,6공 시절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도 응분의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5,6공 시절 온갖 전횡을 저지르고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사(?)하다면, 어떻게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반대로 군사정권의 억압의 칼날에 희생당하고도 원인이 규명조차 되지 않은 소위 의문사의 진상 규명이나, 추운 이 겨울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암수 전원 석방 같은 문제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또 광주항쟁 주역들이 처한 사회적 도덕적인 여러 고통에 대한 배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행위자들에 저항하고 그들의 탄압을 받았던 박종철군과 같은 사람들은 과거청산이 되었다는데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커녕 명예조차 회복되지 못한 현실을 놓고서, 오늘의 5,6공 청산은 결코 정당히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은 오늘의 문민정부를 낳게 하는 데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 개혁과 통일이라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가 내란수괴자 구속이라는 상징적 조치로 국면을 바꾸어 얼마후에 있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조차 지난 94년말 12.12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앞장선다면, 그것은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항상 과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할 때는 그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며, 서명하고 청원하고 시위에 나선 사람이 연인원 100만명은 훨씬 넘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김 대통령은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역사바로세우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시중에는 역사바로세우기를 놓고서 “언제 역사가 넘어졌었나?” 하는 풍자 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김 대통령의 5,6공 청산작업은 전, 노 두 사람 구속을 내걸고 주장하는 구호일 뿐이라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은 개혁과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통일민주국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한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버젓이 자행되는 간첩 김동식 사건과 연계된 무분별적 탄압과 고문의 완전한 근절은 물론이고, 과거 잘못된 정치관행과 군사정권을 위해 지혜와 힘을 제공했던 구시대적 인물들의 청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사회 민주와 통일을 위해 죽어간 넋들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회장 김승훈**

# 과거청산, 이대로 좋은가

박원순 /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1. 서 론

### --시작일 뿐인 김영삼정부의 과거청산

새로운 정권에게 있어 구정권은 언제나 어떠한 형태이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 정당성의 입지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형태와 양상에 따라 구정권에 대한 정리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같은 구정권하의 범죄와 과오에 대한 청산의 노력은 권력의 교체기마다 제기되어왔다. 해방 직후엔 일제하 반민족행위자들의 처벌문제가, 4·19혁명 이후엔 자유당정권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응징문제가, 5·16 이후엔 부정선거·정치깡패의 재판이, 제6공화국과 현정부하에서는 이른바 5공비리와 광주학살의 책임자 처벌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곤 하였던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하에서 그동안 반민족적이고도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의 역대정권하에서 저질러지거나 은폐되어왔던 수많은 권력남용 사건, 인권유린사건, 정치적 범죄행위 등이 일시에 터져나와 그 진실의 공개와 피해자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가 홍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요구들이 제대로 수용되고 처리된 사례를 우리 현대사에서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그 허다한 사건들의 진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의 고통 역시 치유되지 못한 채 내팽개쳐져 왔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그같은 완벽한 '과거의 청산'을 이루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만큼 과거 문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세대와 세대를 넘어 축적되고 해결이 지연된 사례는 보기 드물다. 너무도 오랜 세월 계속된 권력남용과 인권유린, 그 희생자들의 숨죽인 인고, 가해자들의 승승장구와 회회낙락, 이것이 우리 현대사의 좌절의 자화상이다. 이제 미루어진 숙제,

지연된 정의의 심판을 더이상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온 '과거청산'이란 구정권과 그 시대하에서 벌어진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리와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사건의 진정한 해결에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들추어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명목상의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sup>1)</sup> 또는 재발방지 조치가 전제된다. 김영삼정부에 의해 현재 진행중인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광주민중항쟁의 학살자들에 대한 구속, 그 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 의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수십년간 집적되어온 권리비리와 인권침해사건의 전면적 청산의 요구에 비하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 그리고 본격적인 과거청산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 2. 미해결의 사건으로 가득 찬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가 격동의 반세기였다고 말하는 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좌우대립, 민족의 분단과 전쟁, 계속된 독재정권과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은 그 자체로서 민족 내부에 깊고 깊은 상처들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암살과 학살,<sup>2)</sup> 의문의 죽음들,<sup>3)</sup> 정치적 이유에 의한 테러,<sup>4)</sup> 부당한 구금과 재판, 고문과<sup>5)</sup> 처형 등이 줄을 이었다. 권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쿠데타와 반역 음모에서부터 무고한 이름없는 시민의 인권유린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원한과 분노와 억울한 사건

1) 여기서 법률적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언사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어떤 권리侵害 행위가 범죄라는 법률적 평가에 근거하여 범죄자 처벌, 피해자 배상에 대한 권리 인정이 수반된다는 의미이다.

2) 학살사건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 가운데 제대로 진상이 확인되고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군·경·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인원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6·25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르뽀, 돌베개, 1990). 또한 최근에는 제주 '섯알오름'에서 132명의 민간인이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군경에 의해 연행된 뒤 1950년 8월 20일 집단총살된 사건이 발굴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93. 8. 24).

3) 과거의 의문사는 제대로 알려지거나 통계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980년대 후반 조직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학생, 노동자, 군인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한 의문사사건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 널리 알려진 대표적 사건으로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과 장준하 선생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보부에서 수사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 교수 사건은 1988년 카톨릭 사제단에서 고발하였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서 더욱이 수사되지 못하였다(『뉴스메이커』 1993. 5. 참조). 장준하씨 사건은 타살가능성이 많다는 서울방송의 보도와 그렇지 않다는 『월간조선』 사이의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시사저널』 1993. 5. 20, 32~33쪽 참조).

4) 예컨대 1965년 동아일보 간부들에 대한 납치·테러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전 체육청소년부장관까지 지낸, 사건 당시 육군모방첩부대 소속 대위였던 이진삼씨의 개입 의혹으로 널리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동아일보』 1993. 7. 26. 기사 참조).

5)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의 역사는 일제시대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다. 고문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자유당정권에서부터 유신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 고문사건들은 5공 말기의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씨사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 6공 당시의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질환 후유증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인용한 문국진씨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최동, 전희석, 김복영, 강환웅씨 등이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고문피해자고발센터를 열었으며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고문피해자 조사와 제소 도움을 주고 있다(『한겨레신문』 1993. 10. 18. 기사 참조).

들이 쌓여 있다.

당연히 그 시대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加害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은 은폐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되곤 하였다. 그것이 다음 시대에 큰 짐으로 넘겨져 왔던 것이다. 이 사건들은 그 희생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족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의 명예를, 우리 사회에 어둠의 그림자를 남기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와 고통들은 사건 당시부터 은폐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였다. 이른바 반공이데올로기와 이에 터잡아 승계를 거듭한 군부독재정권은 과거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에 관하여 달가워하지 않았다. 한국 현대사에 출몰한 군부정권은 동질성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 전 정권의 비리와 권력남용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희생자들이 정권의 교체기마다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였지만 언제나 그것은 물거품으로 변할 뿐이었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비단 김구 선생 암살사건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 그리하여 이 나라는 천인이 공노할 살인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치권력의 줄만 든든하면 처벌은커녕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범죄자들의 낙원이 되고 말았다. 4월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무너진 뒤 역대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여론이 빗발쳤으나 언제나 정부당국자들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효만료니 일사부재리 원칙이니 하면서 회피하는데 급급해왔다.<sup>6)</sup>

더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계속 장악하거나 그 후계자들에 의하여 장악되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거의 정치적 범죄에 대하여 추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정치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이나 지식인들조차 감히 그 혹한의 세월 동안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거나 진상을 추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의 이른바 '6월항쟁'과 이로 인한 군부독재정권의 붕괴였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온 냉전과 반공이데올로기의 해체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에 의하여 갇혀 있던 진실과 그것에 대한 갈망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몇몇 언론에서 인권침해사건을 자유로이 다루기 시작하고, 열어있던 사법부가 궁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러나 제6공화국정부는 이러한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와 관심에 있어 과거 정권과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같은 사건 가운데 이른바 '거창양민학살사건'<sup>7)</sup> 하나를 예로 들어 과거 한 시대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역대정권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올 수 있었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자유당정권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양민학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6) 꽈태영, "백범 암살배후 이번엔 밝혀야",『한겨레신문』1992. 5. 10. 칼럼

7) 6·25를 전후한 시기에 군인·경찰·우익단체에 의하여 학살당한 민간인만도 1백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보고가 있다(정희상, 앞의 책). 필자는 이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놀라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북 문경, 대구, 부산, 경남 김해군 진영, 경남 충무, 경남 거제, 전남 함평, 경남 산청·함양·거창을 현지 취재하면서 필자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은폐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놀라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 해당했던 사람들조차도 군·경·우익단체에 의해 수십만의 민간인이 학살되었음을 시인하는 증언을 접하면서 그 희생된 죽음의 숫자가 1백만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719명의 양민이 학살되고 이를 진상조사하려 나선 국회조사단에까지 공비를 가장하여 사격을 가한 이 사건은, 이미 자유당정권하에서 조차 관련자 수명이 구속되어 재판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군법회의에서 진행된 이 재판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의 피고 역시 1년 만에 석방되고 말았다.<sup>8)</sup>

그러나 사건 진상이 밝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의 귀에 익은 '은폐·조작'이 제멋대로 행해졌다. 얼마나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으며 학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국회의 논의는 용두사미가 되고, 부산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한 두 관리의 얼굴을 바꾸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 연이어진 군지휘관들에 대한 재판 역시 이와 크게 다른지 않았다. 주시하는 여러 눈들을 가리기 위한 판결에 그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두 화려하게 복귀했다. 오직 죽은 사람만이 원통해하고 말 일이던가?<sup>9)</sup>

4·19혁명에 이르러 삼엄했던 자유당정권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유족들은 비로소 한맺힌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유족들은 조심스럽게 국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국회는 1960년 5월경 조사단을 파견해 무고한 양민학살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새로 들어서는 민주당정부에 이관한 채 더이상 사태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5·16쿠데타는 유족들을 더 큰 절망의 심연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국회에 진정한 유족대표를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하는가 하면 합장해둔 묘지조차 파헤쳐버렸던 것이다. 10·26을 거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서 이들은 정부에 위령비 복원과 위령회관 건립, 위령재단 설립을 탄원했다. 내무부에서는 "이해는 가나 불온세력이 군을 악선전할지 모르므로 양해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회신뿐이었다. 1988년 11월 광주학살·5공비리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하자 고무를 받고 또다시 진정과 시위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정부와 각계에 호소하고 다녔다. 역시 어느 곳에서도 관심은 없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은 좌절과 시름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들에게 또한번의 희망을 주었다.<sup>10)</sup> 이들은 배상조치와 기념관 건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입법의 제정을 목표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이미 1988년 여소야대 정국 당시에도 거창 출신인 김동영 의원의 주선으로 평민·민주·공화당이 합의해 특별입법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었다. 전문 26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된 '거창사건배상특별법안'은 "국가 또는 정부는 국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수행 목적과는 반대로 고의적으로 거창 양민들을 비참하게 시살하고 사건의 시말을 조작 날조하여 사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누명을 씌워 은폐하고, 전가옥, 식량, 가재에 방화 소실 및 가축을 약탈한 범법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사상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재산피해 위자료 실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민자당 이강우 의원 등은 그 법안의 제목 자체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

8) 당시의 사건 진상과 이에 대한 자유당정권의 호도책, 미온적인 재판과정과 그 결과 등에 관해서는 김원기, 「비화 제1공화국」,『동아일보』1974. 3. 19~4. 19, '거창사건'의 연재기사 참조.

9) 노민영·강희정,『거창양민학살—그 잊혀진 피율음』, 온누리, 1988, 서문에서

10) 유족들의 분위기를 어떤 잡지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른바 '거창양민학살사건'이라고 알려진 1951년 겨울의 금찍한 사건은 그 유족들에게 지난 42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왔다. 그 때문에 '문민시대를 맞아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 이곳 유족들에게 때늦은 회한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시사저널』1993. 6. 3, 42쪽).

치법안'으로 바꾸고 그 내용에서도 '배상' 대신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창사건 유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등 본질적 내용을 변질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sup>11)</sup> 이 법안은 당시에는 폐기되었으나 최근 일부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 진상규명이나 배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 유족들의 과거 피해를 회복하고 쓰라린 상처를 아물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 3. 과거청산의 범주와 내용

#### 가. 개인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 등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임명된 테오 반 보벤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희생자들이 가지는 넓은 의미의 배상(reparation) 또는 구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sup>12)</sup>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주택,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① 사실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 ②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 ③ 책임자 처벌,
  - ④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 ⑤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 ⑥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돋는 요원의 훈련,
  - ⑦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 조치
    - ⓐ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특히 민간통제하에 두는 일,
    - ⓑ 군사법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
    - ⓒ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 ⓓ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 ⓔ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 ⓕ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11) 이 법안은 '거창사건' 자체를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국군병력이 1951년 2월 9, 10, 11일에 걸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 면 일원에서 작전수행중 과잉작전으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2조 1항)으로 규정하여 학살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예고하고 만들고 있다.

12) Second Progress Report Submitted by Mr.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9 July 1992, E/CN.4/Sub.2/1992/8, pp. 22~23 참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진실의 공개가 우선된다. 완전한 진실의 공개 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가 되고 말며 정확한 진실의 파악 없는 관용은 특혜의 면책에 불과하게 된다.<sup>13)</sup>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금 짓밟는 것이다.<sup>14)</sup> 제대로 밝혀진 진실의 바탕 위에 희생자들에 대한 사면과 배상, 원상회복,<sup>15)</sup>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거의 권리에 몸담거나 그 권리행사에 관련하여 불의와 부폐,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과<sup>16)</sup> 재산 몫수 등 인적 청산 역시 이 '청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불의와 부폐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도구로서의 법률과 제도, 관행의 폐지와 개정 등 이른바 법적, 제도적 청산의 형태 역시 피해회복과 배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상과 같은 배상의 항목들이야말로 인류가 도달한 현재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와 권리남용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의 국제적 규범인 것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을 단순한 도덕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법규범으로서 받아들이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 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

이러한 배상항목들은 대체로 개인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최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나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청산의 내용과 방향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에 대한 이같은 배상을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상훈박탈, 공직추방의 조치를 통하여 법적 정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을 국가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의 도덕성과 정의, 청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이나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탈나치화(denazification), 탈군사화(demilitarization)의 노력을 집요하게 벌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비쉬정권하에서 나치에 부역한 프랑스의 각계 인사들도 모두 공직 또는 그 ~~직종에서~~ 축방되었던 것도 좋은 선례였다. 오늘날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그 독재를 지지하고 지탱하였던 언론인, 법조인, 고위관료등이 그대로 지금도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3) José Zalaquett, "Confro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Former Governments: Principles Applicable and Political Constraints", Aspen Institute for Humanistic Studies Conference on State Crimes, November 4-6, 1988, p. 10

14) José Zalaquett, 위의 글, 11쪽

15) 원칙적으로 희생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법이다. 생명의 박탈,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상처는 영구한 것이다. 따라서 배상과 원상회복이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루과이에서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배상위원회 설치, 망명자들의 귀국 촉진, 정치적 이유로 퇴직당한 사람들의 원직 복직, 정치범으로 고생한 사람들의 재판 및 수감생활중의 비용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José Zalaquett, 위의 글, 52쪽).

16)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보는 견해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체제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유린과 정치권력 남용에 대한 폐는 처벌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수와 존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있어 범죄자들의 처벌은 부분적인 치유책이기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Alice H. Henkin, "State Crimes: Punishment or Pardon -Conference Report", the Aspen Institute, November 4-6, 1988, p. 2 참조).

나아가 그 불의한 시기에 불법적인 권력이 만들어낸 제반 혼적을 말끔히 지워내지 않으면 안된다. 위헌적인 쿠데타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과 그것이 행한 행위는 무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행위들을 완전히 무효라고 한다면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정질서가 모조리 무효가 되어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어디까지가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로 할 것인가가 논란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무효인 권리가 만들어낸 주요 불법 질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현대사에서 보면 1961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1972년의 비상국무회의, 1980년의 국가보위법회의등 쿠데타권력기관은 아무런 국민의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개의 법률을 양산해 냈다. 무효로 선언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법률들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유효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과거청산은 마땅히 부당한 권리가 만들어낸 이같은 '악의 유물'을 정리할 것을 요구한다.

#### 4. 과거 청산의 법적 도구, 그 유용성과 한계

##### 가. 개관

위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들을 오늘날 재조명하여 법적 처리를 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잘못된 법률과 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 처형되거나 수형생활을 한 경우 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 등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그 사건의 수사 개시 또는 재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그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언제나 부닥치는 것은 과연 재심절차가 효과적으로 그같은 원죄(冤罪)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제도인가, 민형사상의 시효제도에 의하여 더이상 문제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과연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성실하고도 단호한 조사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이다. 적어도 현재의 법률체계와 그 운용과 관행은 위와 같은 구제조치를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체계에서 실효성있는 인권구제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종래 확립된 법률과 제도의 변경, 새로운 해석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제도들의 운용현실, 한계와 함께 새로운 이용가능성도 간략히 검토해본다.

##### 나. 재심제도

###### (1) 재심에 의한 구제의 필요성

원래 모든 인간의 재판이란 과오가 있게 마련이고 판사란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sup>17)</sup>. 특

히 이 나라에서는 그동안 권리남용에 따른 인권침해와 국민의 희생이 대체로 법률이라는 이름과 사법부 판결, 결정이라는 권위에 의해 정당화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수없이 양산된 양심률과 사법부 판결, 결정이라는 권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는 정치권의 구속과 처벌이 바로 법관의 서명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당하지 못한 법률, 위법한 수사·재판절차에 기초한 이와 같은 구금과 판결은 사실상 위법부당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sup>18)</sup> 더구나 그당시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건들이 정치권력의 주문과 압력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유죄로 조작되거나 중형이 선고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억울한冤罪사건이 만들어졌고 양심수의 양산이 이루어졌다. 법률과 사법과정에 대한 광범한 불신이 형성되었고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판과정의 부당성은 사법관계자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6.25직후 육군본부가 대구에 내려와 있을 때 육군법무감찰이 대구고법의 묵은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사건을 모조리 군법회의로 처리했는데 법정이 모자라 마당에서 공판을 열기도 했다. 노천법정인 셈이다. 이 노천법정은 아마도 사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사건이야 신속히 처리됐지만 아무래도 심리에 소홀한 점이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sup>19)</sup>

"주심이었던 나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 하나가 있다. 1987년 8월, 29세의 청년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광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이었다. ---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보안법위반으로 광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이었다. ---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는 것도 성의가 보이지 아니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서도 억울하다는 결론만 강조했지, 서라는 것도 성의가 보이지 아니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서도 억울하다는 결론만 강조했지, 설득력있는 논리적 전개를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옳다고 생각한 것은 공소사실 자체에서 내다보이는 조작성 때문이었다. 북한에 다녀오고 말고는 고사하고 국내에서의 간첩활동이라는 것도 어디에 발전소가 있고 군부대가 있고 하는 것을 탐지했다는 등 판에 박은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그 사건은 상고기각이 되어 법률상 틀림없는 재판으로 확정되고 말았지만 두고두고 꺼림칙해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sup>20)</sup>

대법관을 지냈던 사람들조차 '뒷맛이 개운치 않고' '꺼림칙할' 정도의 재판들을 해 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재판이라면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거나 사법적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이 성행해 왔음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 우리 역사속에서 정의의 잣대와 저울추가 제기능을 다해오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진상이 이러하다면 사법적 과정에 의해 재단되어온 그동안의 수많은 역사적 진실이 교정되어야 하며 그 법적 판단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사법부의 독립과 신중한 재판절차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무죄가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경의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자백사실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이루어지고 그에 근거하여 국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앞다투어 제기되어 '국고를 축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17) William Ribton, New Trials in Criminal Cases, Butterworths, London, 1853, p.3

18) 이러한 사실은 일부 법관들 스스로가 자인한 바였다. 소장 법관들의 '사법부 개혁전의서'의 일부 내용이 잘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 수호를 1차적 임무로 하는 사법부는 마땅히 '그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 우리 사법부는 그와 같은 선언을 침묵으로 대신했고, 나아가 '그것이 정의임을 선언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의 정치권력 앞에 무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1993. 6. 10.)

19) 고재호, 법조반백년-고재호 회고록, 박영사, 1985, p.196

20) 박우동,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5, p.158-160

21). “육감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행함으로써 현직 경찰관에게 살인누명을 씌워 나중에 진범이 잡힘으로써 겨우 대법원에서야 풀려난 경우조차 있었다<sup>22)</sup>.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광범하게 고문과 가혹행위, 강압수사가 이루어져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제대로 진실을 밝혀 내기는커녕 단순히 “사건을 법원에 전달하는 지게꾼의 역할”을 하고<sup>23)</sup> 또한 사법부 조차 과거 이러한 불법수사와 증거조작을 걸러내지 못함으로써 억울한 사연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다. 하물며 정치적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단서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정부기관의 기관원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조차 상주하다시피한 과거에 사법부에서나마 진실이 밝혀지기가 어려웠다.

## (2)현행법에 의한 재심제도와 구제가능성

이러한 위법부당한 재판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현재의 소송법 제도하에서는 재심제도에 의해 구제받지 않으면 안된다. 재심은 일단 확정된 재판을 바로잡아서 중대한 인권유린을 구제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다.<sup>24)</sup>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을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 큰 형사소송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의 이념 때문에 근대국가에서 재심제도는 거의 예외없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 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동조 제2호)
- 다.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동조 제3호)
- 라.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동조 제4호)
- 마.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동조 제5호)
- 바.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동조 제7호)

21. 1991년 1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구속기소 되었다가 1993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구완희씨가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4천6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냈는가 하면 충남 강경 어린이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K모군의 가족과 사문서 위조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귀남씨등이 역시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검찰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자백, 구속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동씨와 서울 마포구 대흥동 어린이방화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권모군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이미 승소한 상태였다. 김학동씨는 3천만원, 권군 가족은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1993년 11월 9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22. 이른바 김기용순경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문제점의 분석은 1993년 12월 23일자 중앙일보 기사 참조.

23. 1993년 12월 8일 중앙일보 ‘누명육살이 1년, 검·경·법원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기사.

24) 강구진,『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5, 592쪽

25) 日本刑法學會,『刑事訴訟法講座』第3卷, 有斐閣, 1964, 191쪽

우리의 재심제도가 일본등 대륙법계 입법례에 비추어 그 자체가 크게 부당하거나 후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경우는 훨씬 재심 사유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Larrison v.United States*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의 기준으로서 “그 증거가 있었다면 배심원들이 다르게 평결하였을 것”이라고 정의한 이른바 ‘라리슨 규칙’(Larrison Rule)을 발전시켜 왔다<sup>26)</sup>. 심지어 판사가 배심원들을 비밀스럽게 만남으로써 강한 선입견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 2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죄수가 풀려나기도 했다.<sup>27)</sup>

그러나 종래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재심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에 비추어보면 극히 적다. 구체적 타당성이나 개인의 구제라는 측면 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지나치게 안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의 재심제도가 억울한 사연을 재심에 의해 구제받을 길을 사실상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사법적 정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마침내 법적 안정성까지 해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재심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확정된 사건들이 제대로 물증과 인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뒤집어보면 위조·변조한 문서, 허위로 한 증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컨대 웬만한 국가보안법사건은 별다른 물증없이 공범인 상피고인의 진술이 상호 보강증거가 되거나 사소한 유인물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둘째, 관여된 법관·검사·경찰관에 대한 직무상의 범죄를 드러내어 조사하고 고소하여 이를 유죄판결까지 받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검사는 이를 묵인하고 판사 역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심리하지 않음으로써 조작된 사건이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다.<sup>28)</sup> 그러나 고문한 수사관을 찾아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그와 같은 직무범죄 은폐에 능숙하였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부의 파오에 대해 시인하기를 꺼려왔던 법관들의 입장 역시 재심제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사건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재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금전, 의지를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목격한 검사와 법관에 대해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며, 그들을 상대로 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통상의 재판보다 까다로운 재심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보조할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 (3)진실규명을 위한 투쟁과 새로운 법제의 요구

26) 자세한 것은 Daniel Wolf, “I Can Not Tell a Lie: The Standard for New Trial in False Testimony Cases”, Michigan Law Review, Vo.83, 1925, p.1(WESTLAW)

27) Dennis Riodan, “Freedom for Johnny Spain: The Final Push”, Stanford Humanities Review, Vol. 1 No. 5, 1990, p. 19 이하.

28) 사건 조작에는 고문에 의한 적극적 조작, 예단에 의한 편파 수사 그리고 자백편증의 경향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佐藤友之,『冤罪の戰後史』, 圖書出版社, 198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모든 형태가 대부분의 사건에 결합되어 있어 억울한 사건이 일본보다 훨씬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오판과 조작은 있기 마련이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 안달이며 미운 사람을 사지에 빠트리기 위해 무고한 사실을 고발하거나 투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수사의 정치성, 검·경의 체질, 불리한 증거의 은폐성 등은 사실 어느 나라 수사기관이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하다<sup>29)</sup>. 예단이나 불완전한 감식 또는 감정등은 오판에 한몫을 보태는 요인이다. 여기에 정치적 사건의 경우, 고의적 조작의 의도까지 개재되면 사건의 진실은 의문의 여지없이 날조되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허무한 사실들이 사법절차에서 충분히 걸러져 진실을 드러내는 절차적 보장이 이 나라에는 없다는 사실이며 더 나아가 일단 유죄로 선고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밝히는데 필요한 사회적 양심세력 또는 운동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이라든가 또는 영국의 '길포드 포(Gilford Four)사건' 등은 당시 동시대인들의 양심과 정의감에 바탕한 사회운동이 놓은 결실에 다름 아니다.

일본만 해도 이른바 '冤罪사건<sup>30)</sup>'에 관한 법조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명운동, 재심운동이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다. 昭和48년의 이른바 '白鳥事件'의 재심을 구하는 운동이 높아가는 가운데 松山, 島田, 帝銀事件 등의 구원활동에 참가하던 사람들이 함께 '재심을 구하는 운동을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발전시킬 목적'으로 再審事件全國連絡會가 결성되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sup>31)</sup>. 또한 1969년 3월에 발족한 원죄사건구원연락센터는 "① 1인의 인민에 대한 탄압도 전인민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② 희생자의 사상 신조의 여하를 묻지 않고 구원한다"라는 2대 원칙을 가지고 활동을 벌이면서 각 지역에도 연락센터를 세웠다<sup>32)</sup>.

그러나 불행히도 이 땅에는 이러한 당사자들을 고무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재심을 제기하거나 재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권단체나 사회운동단체, 또는 지성인 그룹들이 전혀 부재하다. 또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변호사단체의 관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sup>33)</sup> 이러한 현실은 극히 미미한 재심제기율, 재심인용 사례를 놓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두 말할 나위가 없다.<sup>34)</sup>

이러한 상황에서 재심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 또는 재심제도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법률은 언제나 국민의 법의식이나 시대의 필요에 적용하여 제정되고 운용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5공청산'의 일환으로 야당에서 재심특별법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있다. 이것은 종래의 재심제도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사법정의를 복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이기도 하였다.

29) 佐藤友之,冤罪の歴史,圖書出版社, 1981, p.217-237.

30) 일본의 유명한 원죄사건으로는 1948년의 幸浦사건, 1950년의 二保사건, 같은해의 小島사건, 1954년의 島田사건, 1955년의 丸正사건 등이 있다.(佐藤友之, 위의 책, p.6)

31) 五味武司 등,『日本の冤罪』, 16쪽.

32) 五味武司, 위의 책, p.89

33) 역시 일본의 경우,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인권옹호위원회의 한 부서로서 존재하는 재심부회(제1부회)를 통하여 수많은 재심사건을 접수·조사·처리해왔다. 소화 57년 한해 재심사건의 관련기록 등사, 조사여행 비용, 담당위원수당 등으로 1,670만 엔을 지출할 정도였다(伊藤和夫,『日弁連と再審の歩み』,『日本の冤罪』, 207쪽).

34) 참고로 재정신청사건 숫자를 보면 1976년 31건, 1977년 29건, 1978년 45건, 1979년 9건, 1980년 28건, 1981년 25건, 1982년 82건, 1983년 37건, 1984년 25건, 1985년 30건 등이다(법원행정처,『사법년감』, 1986, 378쪽).

## 다. 시효문제

### (1) 공소시효의 문제점

지독한 인권유린과 참혹한 피해를 당하고도 오랜 세월 동안 숨죽인 생활을 해왔던 희생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이제, 어떠한 법률적 구제조치에도 당장 걸리는 문제가 바로 시효제도이다. 이땅의 독재정권은 그 희생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伸冤운동을 벌이게 하거나 진실의 규명을 위한 수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고소를 제기할만큼의 자유와 여유와 공간을 남겨주지 않았다. 오직 그 희생자들은 그 시대에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분위기는 자유당정권, 유신시대, 5공정권을 통털어 지속되었다. 세상에 좀 숨통이 터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해자 처단을 위해 목소리를 낼 즈음이 되니 이미 실정법상 정해진 시효기간은 경과해 버렸다. 독재정권의 연속적인 등장과 유지는 그 긴 기간동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조차 전혀 써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 혐의로 수배되어 있는 이근안 경감과 관련하여 공소시효 문제가 일반에게 널리 관심을 끈 적이 있으나<sup>35)</sup> 사실 공소시효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계속 논란되어왔다. 1975년 등산길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상계' 전 발행인 장준하<sup>36)</sup>, 1973년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중 사망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사건등도 공소시효 만료와 함께 진실을 역사속에 묻어두어야 했던 경우이다. 특히 최종길 교수의 경우 6공화국정권이 들어선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정식 고발을 하였고 이에 대해 형식적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1988년 10월 18일 "최교수가 타살되었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면서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은 어렵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를 벌였다면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자살설'의 허구성, 최교수의 연행경위와 조사내용, 죽음의 현장과 사체의 상태, 가족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의 내용, 증거의 은폐등 고문에 의한 살인의 진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었다<sup>37)</sup>. 이러한 부당성 때문에 의문사와 암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제거하라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게 되었다<sup>38)</sup>.

"정치적 반대자의 목숨을 '검은 손'으로 빼앗은 권력의 죄악을 밝히는 일은 희생자나 유족의 개인적 한을 풀어주는 일로 그쳐서는 안된다. - - - 우리나라에서도 고문자와 정치적 암살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최교수의 유족은 '실정법의 공소시효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역사의 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흐느꼈다. 실정법이건 하나님의 법이건 역사의 법이건 간에 인간세상의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고문살인을 저지른 자가 공소시효가 지

35) "이근안 왜 못 잡나—도피 5년째, 수사 제자리 걸음"(『중앙일보』, 1993. 2. 28. 기사), "수배 5년—이근안 안잡나 못잡나, 제자리 맴도는 검·경수사"(『경향신문』, 1993. 3. 1. 기사) 등의 기사에서 이근안 경감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36) 장준하의 죽음에 관하여 타살이나 아니나를 두고 서울방송과 월간조선이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장준하 선생 사인규명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간보고서를 통해 타살 가능성은 밝혔으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자세한 것은 1993년 5월 20일자 시사저널 기사 참조)

37) 최종길 교수 죽음의 의문에 대해서는 뉴스메이커 1993년 5월호 "최종길교수의 죽음은 고문치사였다"라는 제하의 기사 참조.

38) 1988년 10월 21일 한겨레신문 사설

난 뒤 어둠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더불어 살 세상이 아니다.”

## (2) 공소시효의 취지와 현행법

형사상의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15년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신시절 이전의 모든 정치적 범죄들에 대한 소추는 현행 소송법상 불가능해지고 만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공소시효의 근거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시간적 경과에 의한 가별성의 감소<sup>39)</sup>, 증거의 산일(散逸), 이 외에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40)</sup>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소시효제도의 근거는 적어도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많은 정치적 범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 다수의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도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경감되어오지 않았고, 국가가 수사와 소추를 마음만 먹는다면 증거는 있을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고통받기는커녕 국가적 보호의 올타리 속에서 권력과 부를 향유해왔던 것이다. 5공화국하에서의 권력형비리조차 공소시효의 경과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말았다. ‘서울노량진수산시장운영권양도사건’에서 직권남용·협박 등의 혐의를 받았던 당시 이학봉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과 김성배 서울시장이 공소시효 경과로 검찰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공소시효제도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어느 언론사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41)</sup>.

“이런 식으로 하면 5공권력형 범죄의 형사처리는 무망하다. 권력형범죄는 그 범죄권력의 집권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해악은 누적되고 그 폐단은 가중된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범죄는 시효를 넘겨 처벌가능성이 소멸된다. 이 엄청난 모순을 검찰은 역으로 즐겨 놓하고 있다. - - 그 범죄자들이 지나간 세월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창살없는 감옥’을 산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그 중의 한 사람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안기부차장을 거쳐 지금은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다. 또한 사람은 서울시장을 거쳐 건설부장관을 지냈다. 그들의 범죄는 증거가 산일되기는커녕 그들의 철면피하고도 거리낌없는 ‘백주대로강도’같은 공연성 때문에 너무 뚜렷하다”.

## (3) 외국의 법제와 관행

공소시효가 결코 천부의 제도라든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절대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수의 영미법계 국가들을<sup>42)</sup>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시효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39) 여기서 가별성의 감소라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영향의 미약화, 즉 피해감정이나 사회적 응보감정의 회복화에 의한 처벌가치의 체감을 의미한다(青柳文雄 외, 『註釋 刑事訴訟法』第2卷, 立書房, 361쪽).

40)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8, 369쪽

41) 1988년 11월 12일자 ‘시효 갖다대지 말라’ 제하의 동아일보 사설.

42)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앰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오판의 위험성을 엄격한 적법절차의 보장과,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가 현출 불가능한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에 의하여 제거하고 있다.

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와 관련해서는 대륙법계와<sup>43)</sup> 영미법계를 불문하고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sup>44)</sup> 이러한 국가적 관행을 조사한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시효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시효제도는 ‘정의의 요구’가 아니다. 이 제도가 약간의 국내법 체계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은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의 일’인 것이다. 더구나 공소시효제도는 모든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수많은 국가가 전혀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sup>45)</sup>

## (4) 공소시효제도의 전면적 검토

이것은 결코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의 도피처 또는 방파제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제도는 오히려 정의의 실현에 대한 하나의 장애물이며 불의의 의지처에 다름 아니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가 헌법에서 예상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sup>46)</sup>, 잔혹한 정치적 범죄, 학살행위, 가혹한 고문행위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한 공소시효제도의 폐지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적 질서의 구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47)</sup>

5.18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 제출한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감할만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의 내란에 관한 죄, 제92조·내지 101조의 외환의 죄, 군형법 제5조 내지 제10조 반란의 죄, 제11조 내지 제17조의 이적의 죄, 형법 제125조의 직무상 폭행 및 가혹행위죄,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단 집단학살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집

43) 독일의 경우 1969년 나치 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공소시효의 기한을 1979년까지 연장하였다가 1979년에 이르러 살인죄에 한하여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조치를 취하였다(Robert A. Monson, “The West German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A Political, Legal and Historical Expositio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0, 1982, p. 605 이하 참조).

44) 유엔 사무총장이 조사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에 관하여 원래의 법률제도 또는 특별법 제도에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인디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캐나다, 나이지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우간다, 볼리비아, 쿠바, 소련, 영국, 미국 등이며,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없앤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등이다. 이를 범죄의 공소시효가 국내법상 적용된다고 한 나라는 캄보디아, 카메룬, 일본, 말타, 모로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베네수엘라 등이다(U. N. Commission on Human Rights, *Question of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E/CN. 4/906, 15 February 1966, p. 53 참조).

45) U. 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위 문서, 117쪽

46) 이 점은 1995년 8월 25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제출한 ‘5.18내란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대학서명교수 대표자모임’의 의견서에도 지적되고 있다. 이 의견서는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질서 아래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소시효제도는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헌법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내란·외환·군사반란등 헌법해파괴범죄와 대량양민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고소시효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올바르다고 믿습니다.”(‘5.18내란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대학서명교수 모임’ 발족식 및 토론회 자료집, 1995.9.30, p.26)

47) 소박한 견해이기는 하지만 공소시효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역대정권들이 내세워온 바대로 ‘법’이 문제이고 ‘공소시효’가 문제라면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암살을 공모하고 실행한 자들,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들, 암살자를 보호해온 자들을 남김없이 밝혀내어 심판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역의 말로가 어떠한지, 역사를 거스른 죄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가 살아숨쉬게 되고 민족정기 또한 생동하게 되는 것이다”(권중희,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들판개, 1993, 16쪽).

단살해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현법파괴적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소정의 공소시효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sup>48)</sup>.

공소시효에 대한 도전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한국이 고문방지국제협약에 가입한 1995년 1월 9일 지난 80년대 공안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장기수 6명이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sup>49)</sup>.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 정부 스스로 지난 1994년 2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도주기간을 공소시효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공소시효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다<sup>50)</sup>. 해외도피범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면 국내에서 악의적으로 도피한 경우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국가형벌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라면 더욱 공소시효를 진행시킨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일반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995년 12월 19일 국회는 '현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sup>51)</sup>. 이 법률은 내란·외환·군사반란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적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인적 사건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추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1994년 12월 19일 "현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5) 민사시효제도

민사상 시효제도의 취지도 형사상 공소시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존재이유로서 첫째,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생기게 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둘째, 그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며,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권리 위에 잡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sup>52)</sup>

그러나 이 역시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인권유린사건이나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시효제도의 일반적 존립근거가 설득력을 잃는다. 이들 희생자들을 '권리 위에 잡자는 자'로 단정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기조차 하다. 더구나 시효제도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불의에 기초한 질서라고 할 때 오히려 그러한 질서는 번복될 필요성조차 있는

48)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소시효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피의자의 이익, 나아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이다. 그런데 헌법과 현정질서 자체의 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나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공소시효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법파괴적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제2항)

49) 1995년 1월 19일자 "고문은 공소시효 없다"는 제하의 한겨레 21 기사 참조

50) 1994년 2월 24일 중앙일보 기사

51) 1995년 12월 20일자 한국일보 기사

52) 주재황 외,『주석 민법총칙(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630~631쪽 및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1975, 491쪽

것이다.<sup>53)</sup>

민사시효제도의 철저한 관철에 의해 불의한 법질서가 오히려 보호된 사정은 지난 5공화국의 강압에 의해 사유재산권을 포기당한 사람들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다. 재산을 5공정권 또는 권력자가 비호하는 자에게 뺏겼다가 6공화국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시효기간의 경과로 폐소한 경우는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예컨대, 지난 80년 언론통폐합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주식을 뺏겼다며 (주)일신산업등 지방방송사 주주 9명이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취소권행사는 그 시효가 만료되어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1992년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0부 판결)한 것등이 대표적인 예이다.<sup>54)</sup>

## 라. 특별검사제도

지난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쓰아져 나온 과거사 정리,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신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이른바 '5공비리'의 수사를 둘러싸고 특별검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뜨거운 것이었다.<sup>55)</sup> 실제로 이 당시 조승형 의원 등 67인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sup>56)</sup>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특별검사제가 아니라 다수의 특별검사와 수사대로 구성된 특별검찰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sup>57)</sup> 그 이후에도 특별검사제 요구는 줄기차게 터져나오곤 하였으며<sup>58)</sup>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일 때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인권유린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구속·기소·처벌된 사례들에는 대체로 경찰·안기부(중앙정보부) 등에서의 가혹한 고문이 검찰에 의하여 묵인 또는 은폐의 노력이 개재되어 있다. 헤아

53) 1993년 12월 15일자로 "일제하의 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반민족행위와 관련한 민족사 애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안'은 시효제도 배제와 재심 개시의 특례 등을 규정하는 획기적인 것이다. 이 법안의 중요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제3조(제한 적용) 1. 국회는 민족사의 정통성회복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조명 및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2. 국회는 조사 결과 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의 사법절차를 거쳐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민사시효 배제)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 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시효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형사시효와 조사)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때는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추 처벌할 수는 없다.

제6조(재심사유) 국회에서 위 제3조 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상 재심 개시된 것으로 본다.

54) 1992년 3월 28일자 경향신문 기사.

55) 그 당시 특별검사제는 단순히 재야단체의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애당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당시 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자유언론회,『자유언론』1989. 1. 42쪽 이하).

"특별검사제와 전두환, 최규하씨의 국회청문회 출석이 5공비리 처리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는 3권분립에 위배가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특별검사는 물론 국회가 추천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서 조사를 벌이고 일단 조사결과만 국회에 넘겨주면 국회에서 질의를 벌이는 겁니다. 특별검사는 정부의 어떤 기구라도 전부 다 지휘,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수사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56)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고문 등 인권침해사건과 권리형 부정비리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여 5공청산에 과감히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정부의 5공청산 의지 결여와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5공청산작업이 한계성을 노정한 데 되었으므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성과 검찰의 무력성을 극복하여 조속히 5공청산작업을 마치고 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임"(대한민국국회사무처,『제144회 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3쪽).

57) 『한겨레신문』, 1989. 2. 1. 사설

58) 예컨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 수사를 놓고 재야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동아일보』 1992. 9. 17. 기사).

될 수 없는 사건에서 고문 피해에 대한 호소가 줄을 이었고 적지 않은 사건에서 고문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며 그 자백을 얻기 위한 수사기관의 고문은 아니라에서 하나의 체제와 관행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제도화된 고문'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조작이 '밥먹듯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과거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행태로나 조직적 특성으로 보나 의식·관성 그 무엇으로 보나 검찰이 하위 수사기관 또는 검찰 자신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등 가혹행위와 그 은폐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현재의 정치권력이 반대하는 과거의 권력남용사건이나 부정과 비리에 관해서도 용감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새로운 정부하에서도 검찰의 인적, 제도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정치적 사건, 인권유린사건을 검찰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아가 검찰은 현행법상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계류케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안이 도대체 없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요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이 우리 헌법체제하에서 가능한 일인가. 특별검사제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여지와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3권분립을 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들을 침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3권분립 자체의 취지가 권력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볼 때 형식적이고도 무조건적인 분립만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체제하에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sup>59)</sup>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특별검사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도 바로 이같은 헌법해석에 근거하고 있다.<sup>60)</sup>

#### 마. 국제법상의 근거와 그 이용가능성

대체로 권력남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바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하는 일반적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개별적인 협약과 조약에 의해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 제2조는 당사국이 그 규약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고 억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약은 또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당연히 그 구제수단이 된다.<sup>61)</sup>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과거 청산'의 한계를 느낀 남미의 인권단체들이 국제적 인권기구와 협약에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주조약(The Organization of the American States)에 의하여 창설된 미주인권협약(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인권위원회, 인권재판소 등이 이들의 일차적 호소대상이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실종사건'들이 인도에 대한 죄이며, 해당 정부가 그러한 범죄를 수사·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권유린의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법령이 그 자체로서 불법적이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유린사건들은 인도에 대한 죄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되기 시작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에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다.<sup>62)</sup>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학살사건, 고문사건 등도 이러한 법 해석에 따라 '인도에 대한 죄'로 평가하여 시효부적용, 보편적 관할권 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권유린사건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면책의 광범한 세계적 현상은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논의 항의에 직면하였으며<sup>63)</sup> 마침내 유엔 인권 관련 기구들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대책이 마련중이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는 1992년 이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인권범죄 면책의 현상, 처벌 확보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기준 등에 관하여 최근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sup>64)</sup>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상설재판소의 설치를 위한 노력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진전은 인권범죄가 결코 한 국가의 주권의 울타리 안에 방치할 수 없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다.

### 4. 김영삼 정권과 '과거 청산'의 시종

#### 가.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과거 청산' 시발

새로이 등장한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필수적으로 '과거 청산'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자칭 '문민정부'로서 구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과거'의 정리를 통하여 현 정권의 기반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과거 지배집단을 구성하면서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기득권층의 부분적 균열과 와해는 이들이 금기시해온 제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지난 시대의 많은 불의와 구정권이 저지른 비리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진상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현대사의 여러 부분과 사건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열되었다. 과거 항일투쟁을 하였다고 하여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친일행적이 드러나 그 보훈을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었다.<sup>65)</sup> 미술계 일각에서는 김기창 화백의 그림이

59) 김창국,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1991. 9. 9. 및 9. 12. 논문도 같은 취지임

60) 미국의 법무차관이었던 T. Olson이 1983년 환경보호국 분쟁과 관련하여 행한 의회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검사 Morrison이 임명되자 Olson이 특별검사제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내려진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이 법은 헌법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임명조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권한침해로 인해 권리분립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Earl C. Dudley, Jr., "Morrison v. Olson:A Modest Assessment", *The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 38, 1989, p. 255 이하 및 전정구 편,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월보』, 1988. 10, 85쪽 이하 참조

61) Alice H. Henkin, 위의 글, 5쪽

62) The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Issues in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lected Civilian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p. 13

63) 이에 관한 논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 있다. 최근 아시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와 요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범죄자들의 처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Istitute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commendations of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Law-Making and Transition to Democracy*, 1991, Kathmandu, pp. 14~17 참조).

64) Commission on Human Rights, *Progress Report on the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ors Prepared by Mr. Gisse and Mr. Joinet*, E/CN. 4/Sub. 2/1993. 6.

65) 이런 일들을 두고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우리는 온통 전력시비와 과거시비에 몰두해 있는 것 같다"고 쓰고 있다

친일적이라 해서 그의 갤러리 건축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과거 친일부역자들이 각 분야를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실의 발굴과 재해석의 시도는 그 자체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sup>66)</sup> 뿐만 아니라 12.12사건, 5.17사건 뿐만 아니라 5.16<sup>67)</sup>까지도 쿠데타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고<sup>68)</sup>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sup>69)</sup>.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감히 꺼낼 수도 없었던 인물들이나 사건들에 대한 평가와 재해석, 복권운동등이 추진되었다. '페륜아'로 낙인찍혔던 김재규에 대하여도 그의 처형 15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일부 인사들에 의해 명예회복과 재평가작업이 시도되었다<sup>70)</sup>.

한편으로 국회에 의해서도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사안에 대한 조사특위가 생겨나거나 결의안 제출 등이 이루어졌다. 이완용의 손자가 토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를 막는 특별법 제정 활동이 있었고,<sup>71)</sup> 또한 김구의 암살배후 은폐문제와 관련하여 암살범 안두희에 대한 조사활동도<sup>72)</sup> 있었다. 최근에는 여야 의원 74명에 의하여 국회에 '4·3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sup>73)</sup>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과거는 여전히 까마득한 과거일 뿐이었다.

#### 나. '역사의 뒤안길'로 매몰되던 '과거 청산작업'

그러나 새 정부의 개혁과 사정활동은 주로 과거의 뇌물수수 등의 비리에 집중되었고 국민들의 원한이 사무친 인권유린사건, 정치적 테러사건 등은 거의 백안시되었다.<sup>74)</sup> 구시대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왜곡되고 조작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라든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문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된 것이 없었다.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재판에 회

(『조선일보』 1993. 7. 12. "역사논평 고(考)"라는 논설).

66) 그동안 "우리 역사학계가 현실회피적 생활과 진실규명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안주해왔다는 비판"(『동아일보』 1993. 7. 26. 사설)을 듣고 있던 터였다.

67) 김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기자회견에서 "5.16은 분명히 쿠데타였다.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큰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1993년 6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

68) '국사교육내용개준거안연구위'는 1996학년도부터 중고교 국어교과서에서 근·현대사 용어를 손질하면서 5.16, 12.12, 5.17 등을 모두 쿠데타로, 4.19를 4월혁명으로 각각 바꾸는 개편시안을 발표하였다.(1994년 3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69) 김대통령의 5.16평가에 따라 야당은 일제히 당시 민자당 김종필 대표등 5.16관련자의 공직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이 아닌 역사의 재조명을 위해 관련자들을 공직에서 사퇴시킬 것"을 요구했고 국민당은 "5.16이 쿠데타로 규정된 이상 김종필씨가 집권여당의 대표로 계속 존재하는 현실은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993년 6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 5.16의 핵심이었던 김종필은 그후 결국 민자당을 떠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70) 당시 김재규를 변론한 강신우 민자당 의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유신의 심장부를 쓴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분명한 영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김구선생암살진상규명처럼 민족성찾기운동의 일환으로 복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것은 1995년 6월 1일자 뉴스메이커의 "김재규, 그는 폐륜아였나 혁명가였나" 제하의 기사

71) 위에서 본 「민족정통성회복 특별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률안은 "구한말 이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다른 한편 미국적 반민족행위와 관련한 민족사의 왜곡을 시정하고 정통성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 민사시효 배제, 특별검사 임명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72) 1992년 11월 6일 '백범김구선생 시해진상규명위원회' 회장 이강훈 등 23명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에 따라 국회 법사위가 1993년 12월 15일 '백범김구선생 시해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1994년 1월 4일 1차 조사작업으로 안무회에 대한 증언 청취가 있었다.

73) 『동아일보』 1994. 2. 3. 기사

74)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1993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2,093명이 구속되었는바 인·허가와 뇌물수수 등에 연루된 공직자 350명, 금융부조리와 교육비리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 167명, 기타 비리 연루자 1,056명이었다(『동아일보』 1993. 7. 10. 기사).

부된 김근태 고문사건의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법정구속이 고작이었다.<sup>75)</sup>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토록 가혹한 고문이 행해져 그 '독열매'로서 김근태씨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제기<sup>76)</sup>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판결은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과거 청산작업을 포함한 이른바 개혁정책은 곧바로 여러 곳으로부터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개혁주체 세력인 집권당 자체에서의 조직적인 저항, 관료들로부터의 사보타지가 잇따랐다.<sup>77)</sup> 역사평가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증폭되었다. '이승만과 나라세우기'를 통하여 이승만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작업과 '이승만과 나라망치기'라는 대자보로 이에 반발하는 세력이 충돌하였다<sup>78)</sup>. 박정희 전대통령 사거 15주년에 즈음하여 추모세력과 이를 우려하는 세력 사이의 독설이 지면을 채우기도 하였다<sup>79)</sup>.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 노동, 통일 등 많은 분야에서 기득권과 수구세력의 반격에 맞부딪친 현 정권은 결국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청산과 개혁의 한계는 외부의 영향과 압력에서라기보다는 김대통령과 집권세력 그 자체의 한계와 속성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3당합당을 통해 과거청산의 대상인 세력과의 악수를 이미 나누었던 것이다. 이 불의한 세력을 품에 안고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을 외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신의 '嫡子'로서의 5공정권과 이에 몸담았던 '5공세력', 그 연장선상에 있는 '6공세력'이 광범하게 포진하고 있는 김영삼정부가 6공청산, 지연되어온 5공청산, 나아가 유신시대의 정리를 제대로 해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이른바 12·12사태에 관한 김영삼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그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해방 이후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5·16, 10월유신, 12·12사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새 정부는 나름대로 정치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학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0)</sup>

이것은 '말'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만족할 뿐 법률적 청산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더이상 수사를 벌이고 형사적 소추를 단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1993년 5월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 제기한 고소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5.18광주학살사건 마저 최종적으로는 불기소처분함으로써 그러한 김영삼 정부의 불처벌 의지는 의심할 바 없게 되었다.

75) 1993년 8월 23일 그동안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는 고문경관들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다(『동아일보』 1993. 8. 24. 기사 참조).

76) 김근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변호인들의 변론요지서(김상철, 『정의로 가는 길』, 고시계, 1988, 246쪽)

77) 김영삼 정권의 이같은 한계는 태생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민자당이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김영삼 정권이 개혁을 내세웠으나 개혁을 위한 인적 대상은 바로 민자당의 민정·공화계로 상정되는 구정권의 인물들이며, 그들이 바로 현정권을 탄생시킨 중심인물인데다가 아직도 정부와 당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한겨레신문』 1993. 11. 8. 논설).

78) 1995년 3월 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1995년 3월호 길지 기사, 강정구, "이승만 재평가에 대한 올바른 접근", 시민과 변호사, 1995년 4월호 및 좌담 "동서양을 하나의 인격 속에 통합", 월간조선 1995년 5월호 등을 참조

79) 1994년 11월 10일자 뉴스메이커 기사 참조

80) 『한국일보』 1993. 7. 24. 기사

광주문제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김대통령은 "훗날의 역사에 말기는 것이 도리"이며 "진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것이 자신의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담화는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을 크게 설망시켰다(안병찬,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 『시사저널』 1993. 6. 24. 시론, 96쪽).

특히 김대통령은 윤곡사업 감사와 관련하여 '성역없는 조사'를 의지던 감사원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라"는 지시를<sup>81)</sup> 내리고 청와대 박관용비서실장이 '조사불가' 통고함<sup>82)</sup>에 따라 사실상 전직 대통령은 조사대상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또한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등으로부터 2백억을 받았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된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은 1994년 1월 4일 "불우이웃돕기에 썼다는 청와대측이 밝힘에 따라 무혐의처리"하였다<sup>83)</sup>. 전직 대통령들은 이와같이 검찰과 감사원등 모든 사정기관으로부터 치외법권의 특권을 보장받게 된 셈이다.

마침내 김영삼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국제화'선언으로 그동안 들먹여졌던 과거 청산문제는 또 다시 역사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집권당에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던 당시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 역시 이 선언에 사실상 동조함으로써 이제 더이상 정치권에서 논의되기가 어려워졌다.<sup>84)</sup>

#### 다. 미완의 '역사바로세우기'

"이 나라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군사 쿠데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군의 명예를 짓밟은 일로써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군사 쿠데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부끄러운 역사이며 비극 중의 비극으로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제2의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사심 없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책임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sup>85)</sup>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환호시켰던가. 지난 80년의 광주에서 학살당한 원훈만이 아니었다. 삼청교육대, 해직 언론인, 기업을 약탈당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던 모든 국민들의 목을 축여주는 샘물이요, 단비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귀는 너무도 오래 닫혀 있었다. 수만명의 피해자와 시민의 고소·고발, 무기한 단식농성, 99개 대학 6천 4백 26명의 대학교수들의 서명, 수백명의 변호사들의 시위, 천주교 신부들의 천막 농성, 그 마지막에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던가. 얼마나 깊은 좌절이었던가. 지난 16년의 세월은 그 희생자와 가족과 광주시민과 양식을 가진 이 나라 국민에게 얼마나 모독의 세월이었던가. 광주의 가슴에 또한번 못질을 한 것은 다름아닌 김대통령 자신이었다. 바로 2년전 김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었다. 그 한마디. "역사에 맡기자"는 말한마디로 학살자에게는 면죄부를, 희생자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더 이상 현실의 법정 속에서는 정의를 구하지 말것을 대통령은 말하

81) 『동아일보』 1993. 7. 8. 기사

82) 1993년 11월 23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83) 1994년 1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

84) 이기택 대표는 당초 '미래지향 노선'을 내세웠다가 당내 비주류와 개혁의원모임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여 일부 후퇴한 사실이 있다(『한겨레신문』 1993. 11. 8. 기사).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비주류와 개혁의원모임 역시 과거 청산문제에 대해 신선한 정책과 설득력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민자당이 주도하는 '국제화' 물결에서 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85) 1995년 11월 24일자 김영삼대통령의 5.18특별법지시 가운데서.

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대통령의 언명을 12.12와 5.18의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결론으로 그대로 반영하였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검찰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위화도 회군론'과 라드부르흐까지 인용하면서 공소권 없음 결정문에 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검찰은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다시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공소장을 쓰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즉각 전두환을 구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다시 벌였다. 연인원 백만명이 국민대회를 열어도 눈만 깜빡이던 언론도 마침내 특집방송, 특별편집을 통하여 광주학살, 5공의 탄생의 공격에 경쟁을 벌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토록 막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 아직도 여전히 법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의 말한마디 아래 춤추는 검찰과 언론의 몰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다른 슬픔이었고 실망이었으며 그리고 분노였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전두환의 구속과 반란자들의 처벌에 근거를 제시할 5.18 특별법의 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한 것이다. 국민은 김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쳤다. 진정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었다. 전두환의 구속이 가지는 상징성은 참으로 크다. 그는 80년 민주화의 봄을 짓밟고 저항하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마침내 권좌에 오른 인물이다. 그의 구속은 ① 12.12쿠데타가 군사반란이며 ② 5.18의 무고한 학생시민을 살해한 주범이며 ③ 쿠데타에 의한 불의한 권력의 장악에 앞장선 자이며 ④ 무력과 폭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였고 ⑤ 그렇게 집권한 5공은 전혀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해 주고 있다.

더구나 총칼로 일어선 자는 총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시는 우리 헌정을 뒤엎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자가 함부로 결단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소시효의 피난처를 가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누가 쉽게 쿠데타를 꿈꾸려 할 것인가.

그러나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자들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왜그런가. 첫째,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완전한 진실을 캐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미 오랜 시간 검찰은 어떻게 하면 진실을 묻고 불기소처분할 것인가에 소비해 왔던 터에 갑자기 단기간에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책임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처벌로 확대하지 않고 전두환을 비롯한 핵심 반란세력에만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여전히 광주항쟁의 주역들은 '전파자'로 남아 있는 반면 진압의 주역들은 아직도 훈장을 달고 있는 상태이다. 이 자리는 바꾸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네째, 광주의 십자가는 여전히 광주의 것일 뿐 온 국민의 것이 아니다. 광주시의 회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기념일은 마땅히 전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의 광주는 마땅히 역사 속에서도 빛나는 교훈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과서 속에서도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고 그 자료들을 모아두는 변변한 박물관 하나 지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두환의 구속은 5.18의 첫단추를 올바로 긴 것에 불과하다. 5.18 특별법은 마땅히 이 모든 단추를 한꺼번에 푸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구속과 5.18 특별법이 일회적인 해프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사바로세우기'가 온전히 우리 사회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 전두환 구속은 바로 5, 6공의 정통성 상실을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5, 6공하에서 복록을 누렸던 사람들, 지지를 보냈던

세력들에 대한 웅정이 어떠한 형태로든 주어지고, 반대로 그에 저항하고 탄압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현실은 어떠한지 하나의 예만 들어보자.

“그러나 문민정부의 문체부는 ‘문학의 해’기획을 문인협회에 사실상 전담시킨 셈이 되었다.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문학인으로서 상대 단체에 대해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문학예술은 전체 국민의 정신 차원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지금 5, 6공 군사독재시절의 역사적 죄과를 청산하겠다고 현 문민정권이 검찰권을 동원하고 있다. 정권은 이러한데도 문체부는 과거 군사정권의 반민주시책에 대해 지지성명을 내던 단체에게 수구적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양심과 민주화를 위해 투옥과 폭압의 혐로를 걸어 온 민족문학작가회의에 대해 안중에도 없는 듯 홀대를 할 수 있는가. 한 용운, 이육사, 윤동주에 이어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친일 친독재 어용문학계열과는 엄연히 노선을 달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저항적 실천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구중서, “민주화현신 민족작가 홀대 웬말”동아일보 1995년 12월 17일자)

위에서 본 과거청산의 제범주를 만족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너무도 많다. 개인피해 회복의 관점에서도 아직 충분한 진상규명, 가해자처단, 피해자 배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공범자들의 공직추방, 불법적이고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낸 악법개폐등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김영삼 정부의 과거청산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 5. 결론

### ---청산할 과거 있는 한 과거청산은 계속된다

우리는 전략을 말할 수 있다. 사실 전두환을 비롯한 광주학살의 주범들을 구속하고 특별법 하나 만드는 일도 간단치 않았다. 집권당의 대표가 특별법제정에 반발하고 사퇴를 결심했을 정도였다. 전두환과 그 일당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제대로 죄값을 받게 하는 일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다 놓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어느 것 하나 해결 못하면 그것 역시 역사의 과오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전두환과 그 일파에게 좋은일 시키고 마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김영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하는 일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만 칠 일이 아니다.

마땅히 이 모든 과거사,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 요구가 소란스럽고 그 요구를 들어 주는데 시간과 돈이 걸리고 혼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 정도의 사회적 회생과 손실은 각오하고라도 그동안 고통당해오고 수난

당해온 사람들을 위해 이번에는 우리사회가 양보해야 한다.

과거청산, 그것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가 있는 이상 끝없이 나올 주제이다.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 해도 아직 억울하게 느끼고 가슴에 한을 묻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그 목소리는 더욱 크게 우리의 귓전을 울릴 것이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의 사회를 도덕적으로 정화할 절호의 기회이다. 더 이상 정통성과 도덕성의 시비를 불러오지 않을 그런 국가, 그런 정부, 그런 사회를 만들 둘도 없는 기회이다. 그러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 것이다. 지금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과거는 확실히 청산함으로써 우리의 진군은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가해자들의 범죄가 전부가 아닙니다.  
2019년  
작가가 되자 + 농부.  
여전히

## 토론발제

# 부정부패의 원천을 민주대연합의 관점에서

## 청산하자

박계동 / 국회의원, 민주당

### 1. 민주화시대의 정치적 과제

부정부패와 권력의 횡포는 어느 시대나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 발제자 박원순변호사의 주장대로 청산되어야 할 과거가 있는 한 과거청산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이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의 정착을 앞둔 마당에서 그와 같은 과거청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작업은 바로 앞으로 정착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불철저했다. 소위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과거청산은 지속적이고 안정된 작업이 되지 못하고 일회적이고 단절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조치들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라는 이름 하에 개혁적 성격을 회복시키기 일쑤였다. 이것은 현정부의 개혁조치방식이 갖는 특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김영삼정부의 '문민시대'라는 구호는 이미 민주적 제도와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 정부의 일관된 개혁프로그램의 부재와 일맥상통한다. 노조의 요구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거나 일회적 조치로서 과거청산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종의 과도기인 민주화시대에서 과거청산이란 당연히 민주화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제도적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이다.

이 글은 지속적인 작업으로서 과거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제자 박원순 변호사의 관점에 동의한다. 이에 덧붙여 토론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청산이란 단순히 일상적인 과거청산 이외에 더욱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부정부패의 원천을 청산한다는 의식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역사적 진실규명작업과 아울러, 권위주의정권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지속적이 과거청산작업에 따르는 불가피한 혼란을 감수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글은 발제자의 기본적인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과거청산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 청산작업의 대상

무소불위의 권력의 횡포와 그 비호하에 성장해온 재벌의 정경유착으로 상징되는 청산대상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청산대상을 분야별로 규정하기보다 대체적으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가해자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대상을 분명히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소위 권위주의체제에 뿌리내린 바 있는 다

양한 청산대상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토론자는 이와 같은 일상적인 구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구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크게 볼 때 청산대상은 非민주적 대상과 反민주적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민주적 요소는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다양한 문제 즉 전근대적 연고주위, 권위주의적 행태, 기주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민주화세력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반면 반민주적 대상은 전자에 비해 적극적으로 민주화에 대해 저항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과거에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달성했으며, 현정부와도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과거청산이 경제·정치의 불안의 원인이라고 위협한다. 실제는 이와 반대로 민주화시대에서 반민주세력은 부정부패의 원천이자 사회불안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세력약화 및 제거는 정치·결제의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은 청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요소에 대한 박원순변호사의 우려를 일정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과거의 어떤 실적이 자신들만의 성과인 양 강조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점이다.

### 3. 청산작업의 방법

과거청산의 대상과 아울러 그 방법에 있어서 박원순변호사는 특별검사자 도입,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적 조치 및 실질적 배상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와 아울러 정치인 및 시민사회의 민주대연합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대연합은 당위적인 것이 기보다 민주화 및 과거청산대상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사회 저변에 있는 다양한 비민주적 대상은 일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 다양성만큼 해결주체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정당 및 정치세력은 연재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반민주적 대상은 대체적으로 정치적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만큼 이들은 힘을 지니고 있고 일정한 지지기반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보다 참신한 정치세력과 이들을 중심으로 연대해 나가는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민주대연합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이의 실현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현재상황에서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박원순변호사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주장보다 철저한 수사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결단이나 특정사건을 매개로 한 일회성조치의 연장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대안으로 정당 및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과거청산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결집되고 정리된 정보는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산작업의 주축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민주대연합의 매개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이와 같이 선악이 명백한 정치적 이슈는 지역감정의 골을 넘어서 민주연대를 결성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매번 여론조사에서도 지적되듯이 개혁 그 자체에 대한 지지는 절대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 청산되어야할 5,6공 하의 주요 인권문제

## -생명권을 중심으로-

박래군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홍보실장

### 1. 생명권을 침해한 5,6공

5,6공은 학살자들이 피묻은 손으로 공포통치를 했던 암울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13년간의 이 기간 동안 행해진 각종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87년 이후 정확히는 박종철열사의 죽음 이후 한국의 인권상황은 오랜 암흑의 시기를 넘어 조금씩 빛의 세계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기서 나는 당시 인권침해 상황 중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해결 방법은 함께 찾아야 할 부분이다. 다만, 여기서는 고문, 의문사, 열사 등의 문제를 기본적 인권 중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5,6공 13년간은 인권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원시적 폭력성이 제도적으로 관철되던 시기였다. 이런 원시적 폭력성은 민중을 중심으로 한 집요한 저항에 의해 깨졌지만, 불완전한 모습으로 최근 정리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벌어지는 과거청산 작업은 철저한 인적 청산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완전한 신뢰를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과거청산의 문제는 곧 인적 청산이다. 제도적인 장치가 아무리 홀륭하게 정비된다 해도 인적 구성원들이 과거의 원시적 폭력성을 신봉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5,6공 시기의 인권문제는 재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경원대생 장현구씨 분신자결 사건이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의문사 사건 등은 이를 응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생명권은 천부의 권리로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담고 있지 않지만, 헌법 10조와 12조등에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5,6공에서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생명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서 80년대 내내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는 구호가 운동권에서 계속 외쳐졌던 것은 아닐까.

권력의 남용에 의한 인신구속--> 수사기관의 일상적인 고문--> 간첩조작(공안조직사건의

빈발) 또는 의문사의 발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인권유린은 전 사회적으로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의사표현을 위한 민중들의 저항도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만들었다. 극단적인 방법은 종종 분신이나 투신 등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5,6공의 인권침해는 곧 생명권에 대한 침해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5,6공 내내 반인륜적 범죄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18로부터 시작된 5,6공의 반인륜 범죄는 5.18학살처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고 철저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다.

### 2. 5,6공 하 생명권 침해의 주요 양상-고문·의문사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 1) 고문은 주요 통치수단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 또는 제3자가 행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유엔고문방지조약 제1조

고문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악화되고 의도적인 형태다.-유엔 고문방지조약 선언 제1조 2항

덴마크의 로렌스 하트만 박사는 고문은 그 본질을 다음의 여섯가지로 규정한다.

- ① 절대적 불균형성-고문 가해자와 피해자의 절대적 불균형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 대칭성을 파괴한다.
- ② 익명성-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사항 일체를 알 수 없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그들의 삶을 파괴시킨 전체주의 국가의 상징이다.
- ③ 이중의 압박-극한적인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동지들과 관련자들을 고발하든지 양자택일의 끔찍한 상황이 펼쳐진다.
- ④ 기만성-고문피해자들은 대개 날조된 사실들을 근거로 체포되며, 또한 날조된 사실로 인하여 고문을 받게 된다. 고문 가해자들은 여러가지 거짓말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다.
- ⑤ 공간의 변질-침대, 욕조 등 친근한 사물이 고문의 도구로 뒤바뀐다. 자신의 육체마저 저주스러운 것으로 변한다.
- ⑥ 시간의 변질-고문의 시간은 예측 불가능성과 끝이 없는 순환이라는 특징을 가지면서 왜곡된다.

이런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일종의 심리적인 공포와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일상을 살아간다. 고문후유증은 종종 자살로 이어지는 즉, 자신의 사람마저도 포기하게 만든다.

90년의 최동, 95년의 김복영, 최근 경원대생 장현구씨가 그 예다.

80년대의 고문은 물고문, 전기고문, 성고문 등 인류역사가 만들어낸 모든 고문이 시행되었던 고문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경찰서, 교도소, 군대(심지어는 검찰청) 등 거의 국가의 모든 기관에서 행해졌다.

이런 고문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전개하는 운동권에만 미친 것은 아니다. 많은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전쟁 때 월북했거나 행방불명된 가족 또는 친척, 재일동포 또는 이들과 관련이 있는 이들, 남북어부 등이 그 주요대상이었다(심지어 이상형씨는 군인으로 전쟁 때 참가,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70년대 초반이후 간첩은 남파간첩은 거의 없다. 92년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이선실, 최근 부여간첩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 사건에 대해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80년대초반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던 간첩사건은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40일에서 130일까지 밀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인천대현공전에 재학중이던 최영미씨(당시 20세)는 81년 6월10일 집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는 11시간동안 안기부 인천지부(인하공사)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의 혐의는 시국에 대한 불만을 편지로 친구와 주고받았다는 것이고, 당시 부모님이 일본사는 언니의 초청으로 일본에 갔던 상황이었다. 아무튼 그는 그 일로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안기부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감시당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못 이겨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으며, 이런 팔의 상태를 비판한 그 아버지가 환경으로 죽기도 했다(한겨레신문 93년 10월16일자 참조).

이렇듯 수사기관의 불법감금과 고문은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도 가해졌다. 이런 고문은 사실상 사회 모든 구성원을 심리상태를 억눌렀다.

5,6공 사회에서 고문은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 2)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죽음의 진상 은폐-의문사

한국 현대사에는 해결되지 않는 죽음들이 많다. 4.3제주항쟁의 희생자들, 김구선생등의 죽음, 전쟁 당시의 학살사건 등이 그런 것들이다. 개별적인 사건으로 75년의 서울대 교수 최종길, 75년 장준하 선생 사건 등이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 있다. 80년 이후로도 광주, 삼청교육대에서 일어난 죽음들은 집단적인 의문사다. 80년 들어 개별 의문사도 급증하게 된다.

차병직 변호사는 의문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사인이 분명치 않은 죽음 ②사인에 관한 진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죽음 ③사인의 은폐 및 조작의 동기가 정치적 이유나 정부기관의 책임회피에 있는 죽음-이런 죽음을 의문사라고 하면서, 그는 사인과 관련한 진실의 은폐 및 조작의 방법으로 ①성급한 강제부검 ②유족 부재증 부검 ③화장 강요 ④일방적 가매장 후 유족에게 연락 ⑤증거풀 은닉 ⑥시신의 변형조작 등을 들었다.

의문사라는 말은 원래 의혹의 죽음, 의문의 죽음 등으로 불리던 것을 지난 88년 유가협에서 135일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을 전개하면서 굳어진 것이다. 유가협은 의문사를 “죽음 자체가 시간과 경위, 동기들이 불명확하며 정확한 사인들이 은폐된 채 교묘하게 자살 등으로 위장되어 있는 의문의 죽음”이라고 정의한다. 유가협은 단지 정치적 이유에 의한 죽음만이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된 의문의 죽음도 함께 다룬다. 이런 범주로 유가협에 접수되

어 있는 5,6공의 의문사는 약 40건에 달한다.

남미등지에 실종이 있다면 한국에는 의문사가 있다. 실종은 종종 유해 또는 유골마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의문사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동굴에서, 바다에서, 철로변, 군대에서 어느날 갑자기 죽은 시체로 발견된 이들 죽음들은 이미 유족들에게 알려진 상황에서는 증거가 거의 인멸되었거나 파괴된 상태였다. 또, 유족들의 천신만고 끝에 정황을 비롯하여 물증들을 확보한다 해도 이들 사건들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

대체로 거의 모든 의문사는 고문과 깊은 연관이 있다. 박종철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의문사는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들 의문사의 범주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파악할 수 없다. 군대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지만, 군대내의 상황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또,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문사의 경우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즉, 이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이와 관련된 수사관이나 책임자들이 처벌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문사의 발생에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수사기관만이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거의 모든 의문사에 개입된다. 국립과학연구소의 부검결과 자살로 판명이 난다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이철규 사건을 상기해 보자).

의문사 유족들의 경우 정경식씨 부모는 87년 사건 이후 아직도 아들의 유골을 간직한 채 진상규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협은 지난 89년 국회내 5공특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5공특위 막바지에 이 문제는 다뤄지지 못했다. 이미 88년 연말에 5공 청산을 정당의 대표들이 합의한 상태기 때문이었다. 당시 유가협은 또 하나의 면죄부를 의문사 책임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다가 지난 94년 10월 10만명(이중에는 국제인권운동가들도 포함되었다)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원을 했다. 유가협은 이 국회청원에서 의문사 사건의 전면재조사와 이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국회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14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문사 문제는 유가협의 회원들의 노력에만 의존해 어느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5공 의문사 중 김상원씨 사건은 유족들의 집요한 진상규명 활동을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본격적인 연구나 조사활동이 전무하다는 것도 큰 원인이다.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법의학자, 법률가들의 적극적인 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가협과 이들 전문가의 결합으로 의문사 사건의 접수를 받고, 접수된 사건들을 충실히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이 백서는 이후 의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유가협은 해방 이후 일어난 의문사 사건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유족과 단체들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

## 3) 구조적인 타살-열사

열사는 애초에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경우를 일컫는 단어다. 즉, 안중근 의사라고 하지 열사라고 하지는 않았다(이와 함께 유가족이란 말은 열사·투사·전사등의 유족을 말한다. 삼풍유가족은 유족이라고 써야 맞는 말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 열사의 개념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민주주의, 민족자주, 통일을 투쟁에서 사망한 경우, 즉 자결 형태가 아닌 죽음에도 대체로 열사로 인정하게끔 되었다.

유가협의 자료에 의하면 80년대 이전에는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이들이 전태일, 김상진, 인혁당 사형수 등 손으로 끊을 정도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즉 광주 이후 분신을 비롯한 자결, 의문사, 고문치사 등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80년대의 인권상황을 특징짓는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80년대 자결로 저항한 이들만 살펴보면, 80년대 초 1년에 한두건이던 자결은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급증한다. 86년에는 박영진, 김세진, 이재호, 박혜정, 이경환, 진성일, 강상철씨 등이 분신·투신 등으로 민주제단에 자신을 던졌다. 87년 7명, 88년 11명, 89년 11명, 90년 9명, 91년 12명으로 이어진다. 이외에 타살된 경우-고문, 최루탄 등을 따지면 이 숫자는 더욱 많다.

이들의 경우 점차로 학생보다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이 더욱 많은 수를 보인다. 학생들의 경우 광주학살 원흉 처단, 군사독재(파쇼) 타도, 반미, 조국통일, 인권문제 등을 외치며 죽었던 것에 비해 노동자 등 민중들은 열악한 생존권에 대한 항거가 주 내용을 이루었다.

이들의 죽음을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이들 역시 5·6공 인권억압 상황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즉, 자신들의 의사를 적절한 수단으로 표현할 길이 막힌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 표현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이 자결이었다. 특히, 생존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인간적인 자존을 지키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이들의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타살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이들의 죽음을 무조건적으로 미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운동은 이들의 죽음에 빛진 바가 많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조차도 1년에 단 한번 유가협 주관으로 지내는 함동추모제 외에는 이들을 기리는 자리는 없다.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현 정부에서 추진된 바가 없다.

### 3. 걸어-반드시 넘어야 할 5·6공 청산

현재 진행되는 과거청산을 현정권에 맡겨만 두는 것은 우리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5·18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위한 감시운동이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5·6공 청산 작업으로 이어지도록 운동권 세력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5·6공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 지배 구조 혁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경제구조의 왜곡은 민중탄압의 기본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발생한 인권유린 구조는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5·6공 인권유린의 청산은 우선 인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인정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인권가해자들이 현 정권에서도 주요 직책에 참가하는 것, 다시 인권가해자로 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5·6공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원칙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도 한 방법이다.

과거청산작업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의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는 처벌은 정치보복이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에 의한 처벌만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과거청산을 위한 기반을 획득할 수 있다.

과거청산은 악행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80년 국보위에서 개악된 수많은 반인권 법률들이 개폐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민간에서도 할 일은 많다. 5·6공 인권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든가, 5·6공 시기의 일권침해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5·6공은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이보다 다시 5·6공의 어두운 기억이 재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 5, 6공 청산의 역사적 의의와 극복해야 할 과제

황인성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 1. 5, 6공 청산의 역사적 의의

- 전두환, 노태우씨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과거청산작업은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굴절된 현대 정치사를 바로 잡기 위한 총체적 변혁의 시작임.
-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절대권력을 쟁취하고 연장하기 위해 민주적 헌정을 왜곡시키고 부정과 결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구체제와 질서몰락의 시작이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된 것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규정할 수 있음.
- 해방 후 반민특위, 1960년 4.19혁명,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이전의 국민적 노력이 좌절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진행된 역사청산작업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부정한 역사에 참여하여 기득권을 향유한 세력들을 단죄하는 국민적 승리로, 무혈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음.

### 2. 5.18투쟁과 전노구속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 전노의 구속을 핵심으로 하는 5,6공의 정치적 청산은 외세에 의해 정치,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독직과 부패를 필연화했던 국가자본주의의 타락한 형태인 대외종속적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서의 한국사회의 역사적 성격을 마감하는 과정을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것임. 현재적 역관계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상기한 역사적 단계에서 대외종속적인 제벌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당면시기의 정치적 과제는 군부독재의 해체를 중심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착시키는 투쟁이며 (엄밀히 정의한다면 민족민주운동은 변혁운동의 이름으로 보다 깨끗한 부르조아체제의 수립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민중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전제들을 획득하는 것임), 대외종속적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마감과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도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며 결코 자동주의적 이행은 아닐 것임.

### 3. 진행된 과거청산의 성격과 한계

-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청산과 개혁작업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르조아 합리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쇼적 질서를 청산한다는 점에서 궁정적이나 민중의 실질적 권리실현에는 동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정치사회적 심화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95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5.18특별법 제정과 전노의 구속을 계기로 한 과거청산운동(독재잔재청산운동)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요구가 수용되어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세력이 주체가 되는 <농동혁명>이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로부터의 변화를 동반하는 <수동혁명>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불철저성은 5,6공 청산작업이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좌절시켜 온 냉전하의 외세-독재-분단을 고리로 한 한국사회의 모순구조의 총체적 극복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대중의 민족, 민주적 지향과 5,6공 청산을 정파적 헤게모니 장악으로 이용하고 왜소화하려는(지배질서의 단순하고 부분적인 교체) 지배블럭간의 대립을 필연화할 것임.

### 4. 청산정국에 대한 평가

- 전노의 구속은 전술했듯이 군사파쇼적 질서와 부도덕한 구체제의 몰락을 제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성을 내포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긍정성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언명에도 불구하고 청산정국의 출발이 노태우 부정축재파문 인한 정부여당의 궁색한 처지를 탈피, 극복하고 특정정치인의 거세라는 정치적 정략적 의도에서 출발함으로 인해 각종 파행을 임태함. 특히 정부여당의 특정정치인 거세라는 무리수는 청산의 결과로 수반되어야 할 개혁적 정치문화의 정착이라는 국민여망과는 달리 왜곡된 형태의 완강한 지역분할구도의 고착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위험성이 커짐.
- 3당야합의 일주체인 김영삼 대통령 중심의 과거청산작업은 권력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개혁과 청산의 불철저성이 필연적으로 노정되었고, 민주세력의 총단결에 기초하지 못한 일인 중심의 미숙하고 급격한 과거단죄작업은 청산되어야 할 대상들인 수구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민주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전국민적으로 일구어내는데 결정적 한계를 노정시킴.

## 5. 극복해야 할 과제

- 이 과정으로 인적 청산이 완전히 되어있지.
- 역사청산작업이 전노의 구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5.16 군사쿠데타 등 부정한 역사에 참여하여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추악한 세력 전체에 대한 단죄와 그들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또한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책임자들 뿐만아니라 80년 군부에 협조하거나 국보위에 참여하여 입신을 추구한 인사들에 대한 단죄, 5.18 광주항쟁의 무고한 당사자들을 폭도로 매도하여 전파자로 낙인찍은 양심잃은 법조인들의 공직사퇴, 군부의 입이 되어 광주시민을 연일 폭도로 매도하고 광주항쟁의 진상을 호도한 언론인들의 청산 등이 광범위한 인적청산이 진행되어야 함.
  - 전노의 구속과 5, 6공 청산이 진정한 과거청산과 새로운 민주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반 반민주적인 법률과 제도, 그리고 부정한 정경유착의 토대가 되었던 각종 유산이 모두 청산되는 제도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근본적으로 제약해온 국가보안법, 국민의 참여정치와 민주정치를 가로막아온 정치관계법, 독재통치의 지배도구로 악용되어온 안기부 등의 폭압기구와 악법 등이 새로운 민주질서에 부응하도록 개폐되어야 하며, 부정한 정경유착의 토대가 되었던 재벌특혜구조가 근본적으로 철폐되고,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된 기층민중의 민주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단행되어야 함.
  - 한국사회에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의 싹을 근원에서부터 제거하려는 외세와 그 추종세력에 의해 주도된 국내외적인 공작에 대한 구체적 전후관계가 규명되어야 함. 80년 광주의 군투입배경, 주한미사령관 위컴의 <미리 싹을 잘라버릴 필요>가 있어서 한국군 대와 협조했다는 발언,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부의 승인 등 한미간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
  - 5.18 특별법 제정으로 80년 5월 광주가 민주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 항쟁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광주항쟁정신을 전국민적으로 계승, 확산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국민적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발전되어야 함.
  - 군사독재의 유재를 청산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자 하는 과거청산작업의 대미는 새로운 민족사의 미래개척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청산과 개혁작업이 분단독재수구세력을 최결함과 아울러 통일의 물꼬를 여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함.

## 메모

## 故 박종철 열사, 故 조수원 동지, 그리고 1996년!

안녕하십니까? 제39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여성오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삶과 투쟁을 담고 있는 자리에서 1996년 새해 첫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문대 선배 열사로서 저학년 시절 저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인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 준 분으로 종철이형을 기억합니다. 또한 총학생회의 힘찬 출발을 열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함께 열어제끼는 것을 특별히 유의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즈음 종철이형의 고귀한 회생이 마지막이 되지 못하고 1996년 새해까지도 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보내야 하는 남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한편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하여 분출되었던 민중의 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생생히 떠올려 봅니다. 이제는 아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민중 형제들이 더욱도 광폭한 방식으로 억압받아야 하는 지금 종철이형의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목소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 선 정신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어떠한 생각으로 준비하든 간에 겨울나기의 힘겨움을 극복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 계획과 결의로 재충전하여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사람은 물론 이려니와 아직 지난 해의 관성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과 자책으로 새해를 점점 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저의 96년은 앞으로의 1년을 정확히 예측이나 해주려는 듯이 가열찬 투쟁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故 조수원 동지의 죽음에 대하여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바로 그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노체를 지내기로 계획을 하였었는데, 김영삼 정권은 어떠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행사 전반에 대한 불허 방침을 내렸고, 그날 새벽부터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은 천 여명의 전경들에 의해 포위되어 시신탈취의 악몽까지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결국 10시간 여의 대치 끝에 예정을 바꿔 마로니에 공원까지 간단히 치뤄진 노체마저도 앞뒤를 포위한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힘겹게 마쳐야 했습니다. 어제 찾아뵌 백기완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그리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우리 민중들을 죽인 정권은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 온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를 마감케 한 종철이 형의 고귀한 죽음을 생각할 때 아직도 장애인 노점상을 때려죽이고 시신 탈취와 강제부검이

실시하는, 한 노동자를 해고로 수배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가는 문민독재의 작태들은 종철이 형의 염원을 거듭 배신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총학생회 간부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공간에서 남다른 포부로 96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뼈를 깎고 살을 밟리는 진정 비장한 각오로 96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은 이 땅의 보수정치꾼들과 가진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총선 100일 전! 얼마전 각 일간지를 통하여 선포된 말입니다. 선거구 조정이다, 내각제다하여 벌써부터 보수 정객들은 자신들의 지분율을 놓고, 그 위에 '민중들의 삶'이라는 덤까지 얹어서 이리저리 패스, 토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습니다. TV라는 엄청난 위력의 전파매체를 통하여 기껏 한다는 것이 준비된 글을 읽어내린 형식도 문제이만,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은 외면한 채로 신년사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 바로세우기'를 '나라 바로세우기'라 칭하며 이를 공적화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모습은 현정권의 한계와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만이 통 모르는 사실이 바로 3당 합당을 통하여 군사정권의 생명을 이어주었던 자신의 추잡한 협잡 행각을 또한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 한 허울뿐인 역사 바로세우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 쓰지는 않았다라는 그의 궁색한 변명으로 밝히길 거부하는 자신의 '차기 대통령' 시절의 소위 정치자금,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정치적 행위 전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또한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이러한 행위가 총선을 대비한 예비된 행동이라는 것에서는 정치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들의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7년 박종철 열사가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중의 고개를 돌리게 하였다면, 1996년 오늘의 우리는 한 평범한 노동자의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체제의 외부를 바라보게 되는 듯 합니다. 신물나는 정권, 구역질나는 체제의 우리를 옮겨오 는 거미줄에 질려하면서도 체제 내부의 개혁과 현실도피 사이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저항과 비판정신을 복원하는 것, 불의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종철 열사 9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화두일 것입니다. 96년 한 해 더욱 가혹해지고 민중기만적일 저들의 망동에 대하여 단호한 투쟁으로 화답하여야 합니다. 투쟁의 대오 속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중진군 17년 1월 10일 제39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여성오